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 여비 지급 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소집여비 우체국 청구서 부분을 방문수령자가 없어 삭제하고,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병역의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에 민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체복무요원 소집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집일시	소집기간	
소집장소	소집여비	원 * 소집 후 5일 이내 입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병 무 청 장 직인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소집 시에는 소집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소집여비는 소집 후 5일 이내 귀하의 금융계좌(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소집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여비 지급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여비가 재산정되어 입금됩니다.
※ 여비 입금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요원]

○ 소집 시 유의사항

1.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2. 합숙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활동복,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필기구, 손톱깎이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3. 재학생은 소집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 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4. 복직보장 안내 :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소집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소집일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일 연기 사유(긴급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내 민원서류 제출)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소집면제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사유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 소집 시 유의사항

1. 복장은 소집해제시 지급받은 모자(대체군무모), 제복, 신발(군무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합숙에 필요한 물품은 개인별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집일 연기

질병치료, 취업·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자격시험(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의 사유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에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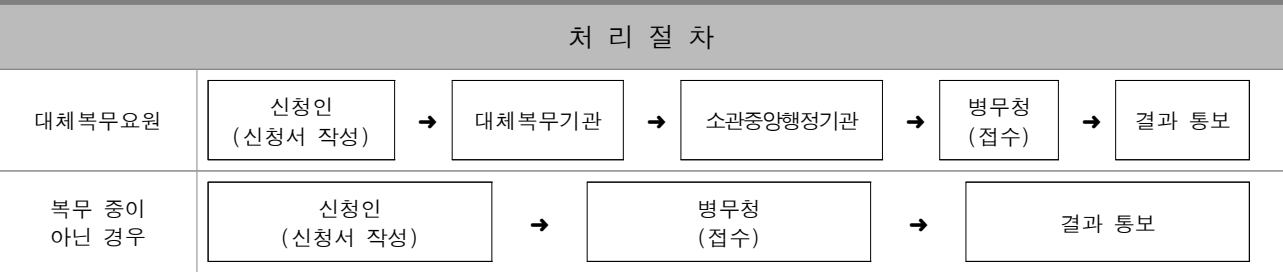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대체복무기관		
	주소		
편입 취소 신청 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역 편입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